

October 14, 2013

갈수록 강력해지는 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규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과 그 파급 효과

최근 전직 대통령의 천억원대 미납 추정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하여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벌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위 추정금은 이미 1997년경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나 그 동안 검찰은 회수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013. 7. 12. 부터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의 최근 개정 내용, 그리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령 동향과 그 시사점을 소개드립니다.

1.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 내용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은 뇌물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상 횡령죄 등 소위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형법 규정보다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을 확대하고, 특정공무원범죄로 직접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재산임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5년에 처음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3. 7. 12.부터 시행된 동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면 국가가 이를 집행(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조의2). 또한 검사는 이러한 불법재산 회수를 위하여,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4)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이러한 검사의 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조의 3)¹. 또한 특정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동법 제9조의 4).

결국 종전에는 불법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재산취득의 경위 등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2013. 7. 12. 법 개정으로 인하여 검사는 불법재산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몰수 및 추징의 시효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써, 검사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불법재산을 추적 및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¹ 다만, 범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의 요청에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우리나라가 UN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회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형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뇌물, 횡령, 배임 등 여러 부패관련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여, 부패재산 회복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패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이하 ‘범죄수익’), 범죄수익의 과실(이자)나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부패재산’으로 규정한 후, 원칙적으로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 3조). 또한 부패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면 제3자로부터 이를 몰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동법 제4조 제2항). 또한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부패재산을 해외에 반환하거나 해외에 소재하는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한 국제공조절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 7조 이하).

특히 동법은, 제3자가 부패재산이나 부패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인 혼합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받은 경우(상속이나 증여 포함)에는, 설사 제3자가 부패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동법 제4조 제2항), 심지어 횡령과 배임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만일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몰수, 추징을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줄 수 있는 제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3.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등 소위 ‘자금세탁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선진국들의 입법 동향을 받아들여 2001년도에 제정한 법률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입니다. 동법은 자금세탁행위의 전제가 되는 횡령죄, 배임죄, 뇌물죄 등 여러 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그 보수로 얻은 재산, 그 과실(이자)이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이러한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인 재산 등을 ‘범죄수익 등’으로 규정한 후, 범죄수익 등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등 소위 ‘자금세탁행위’를 별도로 형사처벌합니다(동법 제3조 제1항).

또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자금세탁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이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여 소위 ‘혼화재산’이 되었다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부분은 몰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동법 제8조). 한편 동법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고(동법 제5조),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收受)하면, 제3자에게도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즉 특정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 종사자 혹은 제3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행위에 가담하거나,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 이를 이전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시사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뇌물, 횡령, 배임 등의 주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범죄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하거나 판결로 선고된 추징금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인적자원의 한계, 관련법령의 미비로 인한 범죄수익 추적의 어려움 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수익 자체를 환수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으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여론이 모아져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강력한 국내외 법령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하여 검찰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은 위와 같은 법률추세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권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추세 및 여론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향후 범죄수익을 환수하거나 자금세탁행위를 수사하는데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도 자금세탁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 Anti Money Laundering) 시스템 검사에 컨설팅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이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집행 확대를 위하여 개별법령을 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몰수·추징을 위한 검사의 조사권한이나 몰수·추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13. 8. 20.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 범죄행위와 무관한 제3자도 범죄수익의 처분 등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재산을 환수 당하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이용성 변호사 | TEL. +82 2 316 4028 | E-Mail. ysulee@shinkim.com |
| ● 홍탁균 변호사 | TEL. +82 2 316 4085 | E-Mail. tkhong@shinkim.com |